

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펀드코드 : CM443)

투자위험등급 :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이상을 회사채, 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모두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며, 이자율변동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어음 및 단기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p>2. 투자전략</p> <p>■ 운용전략</p> <p>회사채, 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상 투자</p> <p>※ 모두자신탁 주요 투자전략</p> <p>▶ 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p>
	<p>주요 투자전략</p> <p>(1) 기본운용전략</p> <p>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2) 세부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보유 전략 중심의 투자로 안정적 이자 수익 추구 - 펀드 듀레이션을 0.5년 내외로 유지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 낮게 유지 - 금리 메리트가 큰 회사채 및 CP/전단채 위주 투자하되, 최장 만기 1년 내외 투자로 위험 최소화 - 펀드 만기시 Roll-over 가능하도록 하여 동일 만기 투자수익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계량분석을 통한 최적만기/최적섹터 선택으로 초과수익 추구 <p>■ 비교지수: MK머니마켓지수 (100%)</p> <p>MK머니마켓지수는 통안증권 4종목, 특수은행채(또는 공사채) 4종목, 시중은행채 4종목 총 12종목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듀레이션은 0.5년 내외인 지수입니다. 본 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p>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1%이내	0.3%	0.20%	0.25%	0.3090 %	42	75	109	184	4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4%	0.30%	0.35%	0.4085 %	42	86	131	229	5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05%이내	0.2%	0.10%	0.21%	0.2088 %	26	49	72	123	2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25%	0.15%	0.24%	0.2583 %	26	54	83	146	32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2.04.19 ~ 23.04.18 기준)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27p)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채권형, 2023.04.28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2.05.17 ~ 23.05.16	21.05.17 ~ 23.05.16	20.05.17 ~ 23.05.1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9.04.19	3.62	2.45	1.93	-	1.87
비교지수		3.52	2.45	1.99	-	1.95
수익률 변동성		0.65	0.49	0.49	-	0.45

주1) 비교지수: (1 * [매경BP_MMI_종합])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자 : 2023.07.03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혜영	1983	책임운용	12	3,712	3.62	-	4.24	3.04	1년 4개월
김유림	1995	부책임운용	-	-	-	-	-	-	-

운용전문 인력

* 운용종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공동운용)이 담당합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종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7시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한매방법	17시이전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종류 C-P, 종류 C-Pe 및 종류 S-P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 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의 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자에 한함)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p>※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 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 02-2090-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yundai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07월 14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4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 (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등 (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제 10조제 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
	고액(I)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집합투자기구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가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